



제329회 임시회

2014.04.1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4년 03월 31일

○ 회부일자: 2014년 04월 02일

3. 제안이유

기관시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기관시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함(안 제4조, 별표 3, 별표 4의3)

1)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및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콘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생은 1인당 1,000원, 교직원은 1실당 4~6인실은 20,000원, 10인실은 30,000원으로 함.

2)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와 해수욕장 개장기간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이용자에 대하여 각각 10,000원을 추가 징수함.

나.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(안 제4조, 별표 4의2, 별표 7)

- 1)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보령교육원이 분리되어 별도 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사용료를 분리하여 징수함.
- 2)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장이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학생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함.

다.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별표 5)

- 1) 사용료 면제 대상에 예·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·군·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을 추가함.
- 2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함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신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·통합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 임해수련운영부와 동일하게 책정하되, 10인실은 10,000원을 추가 하였으며,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가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어 현재 사용료<sup>1)</sup>의 변동이 없이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사용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하고,
- 교육지원청 소속에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된 학생야영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한 것이며,

1) 생활관: 학생 1,000원,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,000원, 공공단체 및 기타 30,000원(해수욕장 개장기간 10,000원 추가-학생 제외), 교직원 콘도(5인실)는 생활관 이용료와 같음

- 사용료 면제 대상에 예·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·군·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 추가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2.13.] [법률 제12394호, 2014.2.13.]

**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**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사무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”로, “자치사무”는 “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”로, “안전행정부 장관”·“주무부장관” 및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 본다.

**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**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 <개정 2013.12.30>

### □ 지방자치법[시행 2013.3.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]

**제136조(사용료)**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

[2014.7.1. 시행예정,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
안]

### 제3장 직속기관

#### 제5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

**제20조(설치)** ① 법 제32조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, 인격을 도야하며,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, 교직원의 후생·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(이하 “수련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-41에 둔다. 다만,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,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,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-14,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,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-3,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에 둔다.

#### 제12절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

**제41조(설치)** ① 법 제32조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, 인격을 도야하며,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, 교직원의 후생·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(이하 “보령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-17에 둔다.

#### 제13절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

**제44조(설치)**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,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·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(이하 “제주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팍지리 1622-61에 둔다.

###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

**제47조(설치)**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교직원복지회관, 영어체험센터를 둔다.